

금정구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금정구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2022년 제2차 정기회의			
일 시	2022년 6월 22일(수) 16:30	장 소	본 복지관 강당
참석자	배O식 위원장, 서O화 위원, 김O환 위원, 손O용 위원, 박O희 위원, 이O남 위원, 조O경 위원, 최O애 위원, 이O경 위원(총9명)		
회의 내용	<p>□ 성원보고 ○ 운영위원 9명 중 9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함.</p> <p>□ 개회 및 인사말씀 배O식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아직은 지속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는 듯함.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실 것을 부탁하며 금정구노인복지관 2022년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함.</p> <p>□ 식순안내 보고안건으로 ①2022년 2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사항, 심의안건으로 ①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②기타 시설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순으로 진행됨을 안내함.</p> <p>□ 보고안건 < 제1안 보고안건 > 2022년 2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사항 1) 보고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 보조금 및 후원금 증액과 이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조정으로 보고함. 2022년도 2차 추경에 따른 예산계획 총액은 3,603,852천원으로, 34,694천원이 증가하였음. 세입은 34,694천원이 증액되어 3,603,852천원 책정되었음. 세입 중 사업수입은 14,504천원이 감액되어 57,363천원이 책정되었음. 이는 본예산수립 시 코로나19운영이 일정정도 정상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을 3분기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반영하여 감액되었음. 보조금 수입은 사업비지원으로 29,482천원이 증가하여 3,150,815천원이 책정되었음. 이것은 선배시민사업인 모범시민, 선배시민교육지원센터, 문학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적 권리보장프로그램 등 총 5개의 사업비와 우울감을 가진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 형성프로그램 지원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추가보조금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음.</p>		

회의 내용	<p>후원금은 코로나블루 치유사업으로 지정후원금이 12,668천원이 증액되어 226,313천원이 책정되었음.</p> <p>잡수입은 7,048천원이 증액되어, 17,063천원이 책정되었으며. 증가사유는 2021년 5월부터 22년 4월까지 2차년도 사업인 다원네트워크의 백본기관에서 사용후 남은 잔액이 잡수입처리되고, 코로나19여파로 잠정중단된 경로식당이 5월 9일부터 운영되면서 직원식사도 함께 가능해져 직원식대비용이 증액되었음.</p> <p>세출내역 중 인건비는 10,817천원이 감액되어 595,365천원이 책정되었음. 이는 사무원직을 수행하던 경력직 직원의 퇴사, 육아휴직중이던직원복귀, 조리사 최저시급에 준한 추가지급, 경로식당 운영으로 영양사 근무일수 증가,등의 사유가 반영된 것임.</p> <p>운영비는 5,472천원이 증액되었음. 이는 2022년도 예산에 대해 진행될 회계감사비용과 종사자외부교육 출장비가 반영되었음.</p> <p>사업비는 세입에서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반영되어 49,542천원이 증액된 2,806,135천원이 책정되었음.</p> <p>잡지출은 세입에서 보고하였듯이 직원식대 책정으로 6,800천원이 증액된 6,900천원이 책정되었음.</p> <p>예비비는 예비비 계수조정과 1차 추경시다원네트워크의 사업비 반납계획금액 일부가 당초 계획보다 9백여만원이 사업비로 지출되면서 16,303천원이 감액된 76,500천원이 책정되었음.</p> <p>자세한 내역은 3~4페이지의 별첨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함.</p> <p>2) 상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0경 위원 :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경우 선배시민사업이 2개 추가지원되면서 사업비가 확대되었음.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용으로 12,000천원이 책정되어 이 부분이 반영되었음. 부산의 26개 노인복지관 800여명이 자원봉사단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부산권역 전체 선배시민 봉사단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센터역할을 본 복지관이 맡아 수행하게 되면서 센터예산이 14,000천원이 증액되었음. 후원금에서 12,000천원이 증가한 것은 정보접근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정후원금이 확정되었고, 키오스크 2대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활용도를 높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그리고 운영비에서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내년에 진행되는 올해예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환 수수료 예산이 반영된 부분임. ○ 배0식 위원장 : 복지부기로 진행했는지 질의함.
----------	---

회의
내용

○ **조O경 위원** : 사회복지기관 회계가 복식부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언급은 10년부터 있었으나, 현재까지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음. 작년 7월부터 지방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회계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회복지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단식부기임. 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로 전환된 결산서가 있어야 함. 21년도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는 부득이 단식부기로 진행된 바가 있어, 올해 예산부터는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진행할 예정임. 작년예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올해 4월 실시하였고, 그 회계사무소에서 올해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계약을 하였으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파기통보를 받은 상태로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 계약체결준비중에 있음. 또한 복지관은 회계검증 별도, 복식부기로 기장전환별도, 회계감사 별도로 각각의 회계사가 진행해야 됨. 많은 비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됨.

○ **손O용 위원** : 복지기관에서의 회계감사는 왜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 **조O경 위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기관은 예산금액에 따라 회계검증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그리고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복식부기 기장으로 감사를 받아야 함으로 이에 대한 전환 수수료 및 감사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심의안건**

<제1안 심의안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 **심의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2분기 운영현황을 보고함. 자료는 5월31일기준이며, 현재 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44명으로 총 48명의 종사자가 총 636명의 이용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종사자관리는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중이며, 이용자관리로는 1년 경과자 114명에 대한 재사정과 신규 이용자에 대한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이 수시로 진행하고 있음.

프로그램 진행은 코로나19상황 안정화에 따라 사회관계증진프로그램으로 5월에 해운대 엘시티전망대, 등을 다녀왔으며, 우울감을 표하시는 이용자의 원예프로그램, 사례회의, 일상생활지원, 등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민간후원자원연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5월까지 총 1,019건이 진행되었음.

이어서 사업운영과 관련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심의함.

최근 생활지원사 및 전담사회복지사의 이용자 응대태도 및 자질 언급에 관한 이용자의 보호자에게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그 경과를 설명함.

생활지원사의 갑작스런 경조사와 코로나 19확진으로 방문서비스 일정에 차질이

회의 내용	<p>생겼으며,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대화 중 문제상황이 발생되었음. 즉 보호자와의 통화에서 생활지원사의 방문누락, 가사서비스 요청시 타이용자와 비교하는 점, 등으로 불쾌감을 가졌던 그간의 상황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전담사회복지사가 일지를 근거로 보호자가 언급하는 사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음. 이때 보호자는 전담사회복지사의 응대태도에 대해 이용자인 어머니와 본인을 의심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불쾌감을 표하였고, 생활지원사 교체와 더불어 전담사회복지사에 대한 퇴사요구를 함</p> <p>이에 개선조치로 보호자와 유선연락과 전담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생활지원사와 전담사회복지사에 대해 이용자 응대태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재발방지 및 생활지원사의 교체, 전담사회복지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배제 및 복지관 사업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될 것임을 안내하였음.</p> <p>2) 상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0경 위원 : 해당 사례의 경우 이용자는 중점서비스 이용자로 1회 방문시 2시간정도의 가사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침에서는 가사지원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용자와 생활지원사간의 가사지원 서비스 정도에 관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많음. 본 이용자의 경우 이번에 변경되는 생활지원사 변경이 두 번째임으로 추후 진행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0남 위원 :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지 질의함. ○ 조0경 위원 : 종사자가 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는 있음. 그러나 이러한 민원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생활지원사간의, 또는 전담사회복지사가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없기 때문에 표현과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부분이 있음. 이에 현장의 상황은 이용자와 지원사간의 1:1진행이여서 확인이 어렵지만, 유선으로의 민원은 상황파악이 필요해 보임. 이에 녹취가능한 전화기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있는 중임. <p><제2안 심의안건> 기타 시설운영현황에 관한 사항</p> <p>1) 심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노사협의회가 6.21 화요일에 진행되었으며 근로자측에서 제시한 2개의 안건,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1개의 안건, 총3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음.
----------	--

회의
내용

① 직원단합지원 활동비 인상안으로 기존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활동비 인상안을 제안하였음. 사용자측에서는 복지관 재무구조 및 자금원천의 활용 안내,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은 법인전인금 자부담으로 집행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식비지원기준은 자부담일지라도 사회복지기관임으로 보조금 집행기준에 적용됨을 설명하고 안건반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인상(안)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② 시간외근무 시 휴게시간에 대한 논의로 현재 시간외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적용에 대해 삭제하는 것에 대한 안건을 제안하였음. 현재는 일과시간이후 시간외 근무시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1시간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추후 노무사 질의를 통한 휴게시간 적용범위 확인 후 안내기로 합의하였음.

③ 기관 주차 공간협소에 따른 주차방안 논의

현재 주차공간협소에 따른 직원차량 주차방안 마련의 필요성으로 제안하게 되었으며, 논의결과 직원차량에 한해 1안)2부제와 셔틀버스를 출근시간 시 이용(개인부담), 2안) 2부제와 더불어 경동아파트 유희주차장 이용과 셔틀버스 출근시간이용, 3안)은 2부제 적용, 등 총 3가지 해결방안에 대한 직원의 견수렴 후 결정기로 합의하였음.

2) 상정내용

- 김O환 위원 : 직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는 사례가 있는지 물음.
- 조O경 위원 : 동아리 지원은 기관에서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음. 다른 기관들이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음. 식비에 대한 기준은 보조금 지원기준이 8,000원임으로, 이에 준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 비용은 순수한 자부담이라는 비용으로 법인에서 기관으로 지원하는 후원금을 제외한 지원금이며 2,000천원밖에 되지 않음. 그런데 예산항목중에 보조금 또는 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거나 제한적인 항목인 업무추진비, 기타후생경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 이러한 자부담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 예상되는 세입보다는 많아 근로자측의 식비 인상(안)은 반영하기가 어려움을 설명하였음.
- 김O환 위원 : 공용차량은 몇 대가 있는 지 질의함.
- 조O경 위원 : 공용차량은 5대 있으며, 직원차량은 많지만 2대를 제외하고는 복지관 주차장 입구 또는 등산로 입구, 등 지정되어 있는 공간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임. 이또한 포화상태로 어려움이 많음. 더구나 3분기 부터는 방역패

회의
내용

스로 인해 이용자수가 증가할 것임으로 주차공간마련이 시급한 상태임. 또한 이용자의 이중주차로 인해 직원들이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 이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코자 제안하게 되었음.

- 조O경 위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에 제출한 상태임. 제출 후 어르신복지팀장께서 안전보건이행과 관련한 사항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강당바닥이 노후화되어 미끄러운 상황인 것에 대한 추경예산편성을 반영해주었음.
- 서O화 위원 : 현재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중에 있으며,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검토중에 있음. 만약에 예산집행이 결정될 경우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위탁기관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임.
- 조O경 위원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연차별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지자체와 논의하며 진행하겠음.
- 조O경 위원 : 이용자공청회가 경로식당 실비이용료를 2,000원에서 2,500원 인상하는 건에 대한 안건으로 진행되었음. 이는 “2020년 장애인복지관 시감사에서 무료급식 이용단가가 2,500원인데 실비이용자가 2,000원으로 진행된다면, 무료급식 이용자들의 보조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되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감사결과가 있었음. 이에 무료급식 이용단가에 준해서 실비이용료를 책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부산시내 노인복지관도 올해 논의가 되었으며 동일하게 맞춰가는 것으로 전체 노인복지관이 협의하였음. 따라서 비용수납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상태이며, 승인되면 7월 1일부터 실비이용료를 2,500원, 감면자는 1,250원 수납할 계획임.
- 배O식 위원장 : 실비이용료가 인상되면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함.
- 조O경 위원 : 현재 김치포함 1식 3찬임. 물가상승으로 반찬가지수를 매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임으로, 특식 또는 후식제공으로 검토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임.

□ 폐회

- 배O식 위원장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함을 전함. 이것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작성자 : 이 O 경 (인)